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전종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7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6.

발 의 자 : 전종덕 · 정혜경 · 송옥주
한창민 · 용혜인 · 윤종오
손 술 · 전진숙 · 소병훈
최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헌법재판의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,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,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음.

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,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,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제고를 위하여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, 특히 헌법소원에서의 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(안 제45조 등).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 본문 중 “조항의 위헌 여부만을”을 “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”로 한다.

제47조제1항 중 “위헌결정”을 “위헌결정(헌법불합치결정,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헌결정과 동시에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 또는 중지를 명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서 정한 날부터 적용을 중지한다.

제75조제1항 중 “모든”을 “법원을 포함한 모든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5조(위헌결정)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. 다만,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.</p> <p>제47조(위헌결정의 효력)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(羈束)한다.</p> <p>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. <단서 신설>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45조(위헌결정) ----- -----<u>조항이</u> <u>위헌인지 여부를</u>-----.</p> <p>제47조(위헌결정의 효력) ① ---- ---<u>위헌결정(헌법불합치결정,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한다)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다</u> <u>만, 위헌결정과 동시에 해당 법</u> <u>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 또는</u> <u>중지를 명하는 결정이 있는 경</u> <u>우 그 결정에서 정한 날부터</u> <u>적용을 중지한다.</u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제75조(인용결정) ① 헌법소원의
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
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.

② ~ ⑨ (생략)

제75조(인용결정) ① -----
-----법원을 포함한 모
든-----

② ~ ⑨ (현행과 같음)